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816

발의연월일: 2025. 6. 13.

발 의 자:윤한홍·권성동·박덕흠

박상웅 · 김도읍 · 김상훈

최수진 · 강명구 · 엄태영

권영진 • 박정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유족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같은 순위 유족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

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람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 급하도록 개정하여 나이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 항제4호 신설 등).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전단 중 "나이가 많은"을 "생활수준이 낮은"으로,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를 "지급한다"로하고, 같은 호 후단 중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을 "생활수준의 산정방식"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 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의 지급순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보상금을

지급받던 사람에게도 이 법 시행일 이후부터는 이 법에 따른 보상 금을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현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생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 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 준이 낮은----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 -지급한다. -----생활수준 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 의 산정방식-----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4.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 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

	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
	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
	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